

## 国民健康保険料の計算方法

保険料は、世帯を単位として賦課され、医療分、後期高齢者支援金分、介護納付金分及び子ども・子育て支援金分保険料で構成されています。国保加入の40歳から64歳までの人については、国保で介護納付金分保険料も賦課されます。年齢による国民健康保険料は、次のようになります。

## ◆40歳未満の人

医療分、後期高齢者支援金分、子ども・子育て支援金分保険料が賦課されます。

## ◆40歳から64歳までの人

医療分、後期高齢者支援金分、介護納付金分、子ども・子育て支援金分保険料が賦課されます。

## ◆65歳から74歳までの人

医療分、後期高齢者支援金分、子ども・子育て支援金分保険料が賦課され、介護保険料は別途介護保険課から通知します。

医療分、後期高齢者支援金分、介護納付金分及び子ども・子育て支援金分保険料は、いずれも所得割額と均等割額の合算額で、計算式は次の通りです。

## \*令和8年度（4月から翌年3月まで）1年間の国民健康保険の保険料計算式

$$\begin{array}{c}
 \text{医療分保険料} \\
 \text{年額} \\
 \text{(限度額 67 万円)}
 \end{array}
 =
 \begin{array}{c}
 \text{所得割額} \\
 \text{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} \times 7.51\%
 \end{array}
 +
 \begin{array}{c}
 \text{均等割額} \\
 47,600 \text{ 円} \times \text{加入者数}
 \end{array}$$

$$\begin{array}{c}
 \text{後期高齢者支援金分保険料} \\
 \text{年額} \\
 \text{(限度額 26 万円)}
 \end{array}
 =
 \begin{array}{c}
 \text{所得割額} \\
 \text{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} \times 2.80\%
 \end{array}
 +
 \begin{array}{c}
 \text{均等割額} \\
 17,600 \text{ 円} \times \text{加入者数}
 \end{array}$$

$$\begin{array}{c}
 \text{介護納付金分保険料} \\
 \text{年額} \\
 \text{(限度額 17 万円)}
 \end{array}
 =
 \begin{array}{c}
 \text{所得割額} \\
 \text{対象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} \times 2.43\%
 \end{array}
 +
 \begin{array}{c}
 \text{均等割額} \\
 17,800 \text{ 円} \times \text{対象者数}
 \end{array}$$

$$\begin{array}{c}
 \text{子ども・子育て支援金分保険料} \\
 \text{年額} \\
 \text{(限度額 3 万円)}
 \end{array}
 =
 \begin{array}{c}
 \text{所得割額} \\
 \text{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} \times 0.27\%
 \end{array}
 +
 \begin{array}{c}
 \text{均等割額} \\
 1,873 \text{ 円} \times \text{対象者数}
 \end{array}$$

◆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とは：前年の総所得及び山林所得並びに株式、長期・短期譲渡所得等の合計額から基礎控除 43 万円を控除した金額の合計です（ただし雑損失の繰越控除額は控除しません。）。

## \*令和8年度均等割額の軽減割合と軽減判定基準額

| 軽減割合 | 所得の範囲（世帯の合計所得）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7割軽減 | 43万円※以下           |
| 5割軽減 | 43万円※+加入者数×31万円以下 |
| 2割軽減 | 43万円※+加入者数×57万円以下 |

※給与・年金所得者の数が2以上の場合は、43万円+10万円×（給与所得者等の数－1）

給与所得者等とは、給与収入 55 万円超の方および公的年金収入が 65 歳未満は 60 万円超、65 歳以上は 125 万円超の方をいいます。

## 별지

###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

보험료는 세대(세대=1 단위) 단위로 부과되며, 의료보험료,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, 개호 납부금 보험료, 아동·육아지원금분 보험료로 구성됩니다.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사람에게는, 국민건강보험에서 개호 납부금 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. 연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◆40 세 미만인 사람

의료 보험료+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+아동·육아지원금분 보험료 부과됩니다 .

#### ◆40 세부터 64 세까지의 사람

의료 보험료+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+개호 납부금 보험료+아동·육아지원금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.

#### ◆65 세부터 74 세까지의 사람

의료 보험료 +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+ 아동·육아지원금분 보험료는 부과됩니다.

개호보험료는 별도로 개호보험과에서 통지합니다.

의료 보험료 ,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, 개호 납부금 보험료, 아동·육아지원금분 보험료 모두 소득할액과 균등할 액의 합산액으로 ,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.

#### \*2026 년도 ( 4 월 ~ 이듬해 3 월 ) 의 1 년간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식

|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료 보험료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액<br>( 한도액 67만 엔 ) | = | 소득할액<br>가입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×7.51% | + 균등할액<br>47,600엔×가입자수 |
|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액<br>( 한도액 26만 엔 ) | = | 소득할액<br>가입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×2.80% | + 균등할액<br>17,600엔×가입자수 |
| 개호 납부금 보험료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액<br>( 한도액 17만 엔 ) | = | 소득할액<br>대상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×2.43% | + 균등할액<br>17,800엔×대상자수 |
| 아동·육아지원금분 보험료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액<br>( 한도액 3만 엔 )  | = | 소득할액<br>가입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×0.27% | + 균등할액<br>1,873엔×대상자수  |

◆'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' 이란: 전년도 총 소득 및 산림 소득과 더불어 주식·장기·단기 양도소득 등과 같은 합계액에서 기초공제 43 만 엔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(단, 잡손실의 이월 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.).

#### \*2026 년도 균등할액의 경감 비율과 경감 판정 기준액

| 경감 비율  | 소득 범위 ( 세대의 합계 소득 )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0% 경감 | 430,000 엔※ 이하                      |
| 50% 경감 | 430,000 엔※+ ( 가입자 수× 310,000 엔 )이하 |
| 20% 경감 | 430,000 엔※+ ( 가입자 수× 570,000 엔 )이하 |

※급여·연금 소득자 수가 2 명 이상인 경우는 43 만 엔 +10 만 엔× ( 급여 소득자 수 -1)

급여 소득자들은 급여수입이 55 만 엔을 초과하는 분 및 공적연금수입이 65 세 미만은 60 만 엔을 초과하고, 65 세 이상은 125 만 엔을 초과하는 분을 말합니다.